

제 호

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

1. 기관명:

2. 대표자 성명:

3. 사무소 소재지:

(전화번호:)

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 기관을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인